

특수교육과 관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의 변화에 관한 고찰

김 영 결*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과

권 기 홍**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윤 정 하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요 약 》

본 연구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과 관련된 교육부 훈령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특히 훈령에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내용이 변화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 어떤 의미와 시사점을 주는 것인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를 위해 1997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8회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에 대한 훈령의 내용과 변화 사항을 살펴보고, 이중 특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대한 훈령은 전산처리 시스템에 따라 제1기 전산처리 도입기(훈령 제558호: 1997년-제671호: 2005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제2기 전산처리 발전기(훈령 제676호: 2005년-훈령 제187호: 2010; 교무업무시스템), 제3기 전산처리 정착기(훈령 제205호: 2011년-현재; 차세대 나이스)로 구분할 수 있다. 훈령 변화에서 언급된 특수교육 관련 내용은 훈령 제676호(2005년), 제719호(2007년), 제228호(2013년) 등이 있는데, 훈령 제676호에서는 치료교육에 대한 명시, 훈령 제719호에서는 기본교육과정 대상 학생에 대한 자료 보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훈령 제228호에서는 치료교육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나, 개별화교육프로그램과 같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부, 특수교육, 전산처리 시스템

* 제1저자

** 교신저자(rwood@edunavi.kr)

1. 서론

교육 목적과 이념을 각 급 학교에서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에 따라 교육기본법(법률 제11690호)을 바탕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 학교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학교 교육을 위한 필수 사항과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훈령을 통하여 교육과 관련된 행정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및 관련 권한 행사를 지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기록과 관리는 ‘학교생활기록부’라는 법적인 장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작성 및 관리지침에 대한 규정은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고 이를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와 기타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된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과 관리에 대한 훈령은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정을 통하여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우리나라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변천을 요약하여 보면 1955년 1월 25일에 시행된 문교부령 제10호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의 서식 및 처리 요령’를 시작으로 하여 2013년 2월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대한 훈령을 담당하는 부처는 2013년 2월까지 총 4번의 변화가 있었다.

문교부(1948.11.4.)를 시작으로 교육부(1990.12.27.), 교육인적자원부(2001.1.29.), 교육과학기술부(2008.2.29.)로 이어졌으며, 각 부처에서 내린 훈령은 문교부에서 7회(훈령 제10호, 제21호, 제24호, 제146호, 제286호, 제323호, 제459호), 교육부가 9회(훈령 제509호, 제527호, 제536호, 제542호, 제545호, 제558호, 제587호, 제602호, 제607호), 교육인적자원부 5회(훈령 제616호, 제671호, 부령 제867호, 훈령 제676호, 제719호, 제728호), 교육과학기술부가 8회(훈령 제61호—제141호, 제158호, 제187호, 제205호, 제239호, 제257호, 제282호)로 부령을 포함하여 총 30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과 관리에 대한 훈령의 변화는 <표 1>과 같다.

<표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관련 훈령

순번	훈령명	번호	개정일
1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서식 및 처리 요령	문교부 훈령 제10호	1955.01.25
2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서식 및 처리 요령	" 제21호	1956.05.07
3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생활기록부의 서식 및 처리 요령	" 제24호	1956.10.12
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취급 요령	" 제146호	1964.06.24
5	"	" 제286호	1976.02.26
6	"	" 제323호	1976.09.07
7	"	" 제459호	1989.02.23
8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취급 요령	교육부 훈령 제509호	1994.11.14
9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	" 제527호	1996.01.20
10	"	" 제536호	1996.09.02
1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	" 제542호	1997.01.03
12	"	" 제545호	1997.02.25
1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	" 제558호	1997.12.01
14	"	" 제587호	1999.05.01
15	"	" 제602호	2000.03.17
16	"	" 제607호	2000.08.07
17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	2001.03.29
18	"	" 제671호	2005.02.25.
19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	2005.09.25.
2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훈령 제676호	2005.09.25.
21	"	" 제719호	2007.02.28.
22	"	" 제728호	2007.07.27.
23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호	2008.07.28.
24	"	" 제141호	2009.09.23
25	"	" 제158호	2010.01.22.
26	"	" 제187호	2010.07.29.
27	"	" 제205호	2011.03.01
28	"	" 제239호	2012.01.27
29	"	" 제257호	2012.06.29
30	"	" 제282호	2013.02.15

1955년의 문교부 훈령 제10호에서부터 1996년 교육부 훈령 제527호까지는 교사가 담당학생의 기록을 직접 서식과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방식이었으며, 90년대 이후 교육정보화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워드프로세서 수준으로 일부의 기록에 그쳤다.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교육에 IT 관련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교육행정에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 관리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훈령이 1997년 12월 1일에 처음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이라는 제목으로 개정되었다(훈령 제558호; 교육부, 1997). 이후 7차 교육과정의 등장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활용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특수학교에서도 관련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기록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교육부 훈령에 특수학교를 명확히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 관리 및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훈령 제587호; 교육부, 1999). 훈령에 명시되기 이전까지는 명확한 규정 없이 일반학교에 준하는 기준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기록하여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훈령에서 특수교육을 직접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특수학교가 다른 학교급과 동일하게 인식되었다는 점과 함께 특수학교의 교육활동이 다른 일반 학교급과 구별하여 관리 및 기록할 사항이 필요하고 특수학교 운영 및 관리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과 관련된 교육부 훈령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수학교의 교육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훈령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처리와 관리에 대한 사항이 특수교육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의 변화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관련 교육부 훈령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관련의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1997년 교육부 훈령 제558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서부터 2013년 2월에 개정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까지 총 18회의 변화과정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을 중심으로 한 교육부 훈령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1997년부터 2013년 2월까지 개정된 훈령에서 특수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II.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의 변화 과정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은 보면 1997년 12월 5일에 시행된 교육부 훈령 제558호 ‘초등학교·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으로 시작하여 2013년 2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으로 이어진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대한 훈령은 총 18회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다시 전산처리 하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3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산처리가 시작된 훈령 제558호 ‘초등학교·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 1997)에서부터 훈령 제671호 ‘초등학교·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2005)까지를 제1기 전산처리 도입기,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규칙’ 및 훈령 제676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인적자원부, 2005)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87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0)까지를 제2기 전산처리 발전기,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205호 ‘학교생활기록 및 관리지침’에서 현재까지를 제3기 전산처리 정착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인 전산처리 도입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으로 처리한 시기이며, 제2기 전산처리 발전기는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의 제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나 보존에 관한 규정들은 자주 변동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분명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부령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무업무시스템’이라는 교무학사 업무처리만을 담당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및 활용하게 되었다. 제3기 전산처리 정착기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위하여 변화된 훈령과 함께 이전에 교육행정시스템과 교무업무시스템을 통합하고 여기에 회계시스템 등과 같은 여러 시스템을 포함하여 새로이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개발 활용하게 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대한 훈령의 변화와 활용 시스템은 <표 2>와 같다.

23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3호)

<표 2>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관련 훈령 및 활용 시스템

구분	순번	훈령명	번호	개정일	시스템
1기 전산처리 도입기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	교육부 제558호	1997.12.01	초기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2	"	" 제587호	1999.05.01	
	3	"	" 제602호	2000.03.17	
	4	"	" 제607호	2000.08.07	
	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	2001.03.29	
	6	"	" 제671호	2005.02.25.	
2기 발전기	7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부령 제867호	2005.09.25.	교무업무 시스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훈령 제676호	2005.09.25.	
	8	"	" 제719호	2007.02.28.	
	9	"	" 제728호	2007.07.27.	
	10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호	2008.07.28.	
	11	"	" 제141호	2009.09.23	
	12	"	" 제158호	2010.01.22.	
13	"	" 제187호	2010.07.29.		
3기 정착기	1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 제205호	2011.03.01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15	"	" 제239호	2012.01.27	
	16	"	" 제257호	2012.06.29	
	17	"	" 제282호	2013.02.15	

1. 제1기 전산처리 도입기 [훈령 제558호(1997) ~ 훈령 제671호(2005)]

제1기 전산처리 도입기는 1997년 교육부 훈령 제558호부터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1호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1997년 제558호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개발 및 활용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 시도로 교사의 업무경감, 학교생활기록부 보관 및 활용의 전산화를 시작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작으로 일반행정 서비스와 함께 교무업무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 학교행정의 전산화에 대한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999년 교육부 훈령 제587호는 「새 학교문화 창조」 추진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2002학년도 새 대학입학제도에 대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비교과교육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래의 교육부 예규 중 학업성적관리지침에서 교과 성적에 수행평가 성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2000년 이후의 제602호, 제607호는 수준별교육과정의 도입, 특별활동의 영역구별, 재량활동의 신설 등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훈령 제616호는 제7차 교육과정이 연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지침을 개정·보완하였고, 훈령 제671호는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학습발달상황을 개정한 것이다.

이 시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에 있어 수기(아날로그 방식)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산처리 및 관리(디지털 방식)로 전환을 이루는 기점과 함께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변화를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초기의 시스템은 초·중·고등학교용만 제작되어 특수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학교용은 개발되지 못하여 사실상 특수학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었다.

2. 제2기 전산처리 발전기

[부령 제867호, 훈령 제676호(2005) ~ 훈령 제187호(2010)]

전산처리 발전기인 제2기는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의 제정을 기준으로 2010년 7월의 훈령 제187호까지로 볼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나 보존에 관한 규정들은 자주 변동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분명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부령으로 제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학생 정보 항목의 공유 범위와 보존기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와 훈령 제676호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교육정보 시스템으로 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부령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학생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제목의 부령과 함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으로 훈령 제·개정하였다.

이후부터는 명칭에 있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훈령이 변경되게 됨에 따라, 인권보호와 학생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교무학사 영역을 분리하여 새로이 ‘교무업무 시스템’을 개발 및 활용하게 되었다.

‘교무업무시스템’은 교무학사와 관련된 활동들을 기록 및 관리하여 사실상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개발단계에서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학교용 시스템도 개발하게 되었다.

특수학교용 교무업무 시스템은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병설되어 있는 것, 치료교육활동의 기록, 유치원 과정 및 전공과정에 대한 기록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독립된 시스템으로 개발되었으며 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초·중·고등학교와의 전출입과 관련된 업무도 전산처리하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9는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개정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 발표(교육인적자원부, 2004)되면서 인한 교육활동의 변화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제728호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용어의 변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호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의 부처 명칭의 변경과 교과목 평가 입력 방법의 변화를, 제141호, 제158호, 제187호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그 적용을 위하여 변경된 사항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

제2기 전산처리 발전기는 주요 특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관리가 정착되면서 드러난 개인정보보호, 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과 함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무업무시스템’이라는 교무학사업무 전용 시스템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게 되었으며 특히 특수학교용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구축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3. 제3기 전산처리 정착기 [훈령 제205호(2011)~현재]

전산처리 정착기인 제3기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부터 현재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변경된 훈령은 제205호(교육과학기술부, 2011.), 제239호(교육과학기술부, 2012), 제257호(교육과학기술부, 2012), 제282호(교육과학기술

술부, 2013.)로 대부분이 교육과정의 변화와 그 적용을 위해 변경된 사항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

제3기를 전산처리 정착기로 이름 붙인 것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교무업무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구축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차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으로 개발되었으며, 교육행정시스템, 교무학사시스템, 학교회계시스템, 자료집계시스템과 문서관리의 업무관리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성하는 업무포털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차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담기관이 되어 삼성SDS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하여 2010년 4월 27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교육행정서비스를 보다 수준 높고 사용자 중심으로 구축하여 교직원 업무경감 및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교무업무영역에서 다양한 학교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과목 편성의 자율화, 교과 교실제 사용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출결 및 성적처리 지원 서비스 제공 기능이 추가 되었고, 또한 특수학교 개별화교육과정의 법제도적 검토 및 양식 표준화를 제공하고 기능을 탑재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었다.

특수학교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작성 및 지원이 나이스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체가 되어 16개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교무업무시스템 담당자들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특수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별화교육계획 양식을 수집·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필수항목과 학교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학교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이 작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는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계획이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모두 작성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별화교육계획의 서식이나 기재의 양 및 기재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를 전산화하여 작성 및 관리하게 위해서는 표준화된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에 특수학교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이 탑재되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의 연차적 적용이 끝남에 따라 치료교육활동에 대한 조항이 훈령 제 228호(교육과학기술부, 2013)에서 삭제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큰 변화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특수학교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이 추가로 개발되어 활용하게 됨과 훈령에서 치료교육활동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것을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Ⅲ.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서의 특수교육 관련 내용 분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대한 훈령은 1955년(문교부 훈령 제10호) 부터 2013년 2월(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까지 총 3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중 교육부 훈령 제558호부터 시행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은 아날로그 방식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이루는 기점이라 볼 수 있다.

<표 3>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의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훈령에 특수교육 관련 내용이 언급 및 변화된 훈령은 총 6회, 교육부 훈령 제587호,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6호,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9호,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8호,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이다. 이상의 해당 훈령에서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의 변화

번호	개정일	훈령명	비고
교육부 훈령 제587호	1999.05.0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	‘특수학교’ 최초 명시 성적관리의 법적 기준 제시 NEIS로 학생부 전산관리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	2001.03.29	"	특수학교 학생부 자료처리 문제 인식
" 제676호	2005.09.2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특수학교용 교무업무시스템 개발 치료교육활동 내용 신설
" 제719호	2007.02.28	"	기본교육과정 적용 학생에 대한 자료 보존 명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8호	2010.01.22	"	치료교육이 치료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
" 제282호	2013.02.15	"	차세대 나이스 개발 (2011년 적용) 치료교육 삭제

1. 교육부 훈령 제587호 특수교육 관련 내용 분석

훈령 제558호(교육부, 1997)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는데 있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훈령 제558호까지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특수학교에서는 훈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용범위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볼 수 있으나 특수학교라는 정확한 명칭은 훈령에 나타나 있지 않아 특수학교에서 이를 근거로 활용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교육부 훈령 제587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요령과 자료관리 및 보안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적용하되,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및 기타학교에서는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587호(1999.5.1.)는 특수교육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제2조 적용범위에서 처음으로 특수학교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특수학교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전산관리지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학업성적에 관한 부분을 훈령의 ‘별지6호’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와 관리 항목 ‘6. 학업성적결과처리’에서도 특수학교를 명시하고 있다.

이 훈령을 통하여 특수학교의 학업성적관리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 특수교육 관련 내용 분석

2001년 5월에 시행된 훈령 제616호는 기존 훈령을 일부 개정한 것이 아니라 새 훈령을 제정한 것이다.

24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3호)

훈령 제616호는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방법을 정비·보완하여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고, 변경된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식을 학교급별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적용으로 교사들의 수업활동 이외의 업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훈령에서는 적용범위에서 특수학교를 언급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교육과정의 변화에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변동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훈령 제616호

○ 개정취지

-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방법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 **교사가 수업 외 감당해야 할 업무를 경감**시키고자 함

○ 기본 방향

- 학습활동의 개별화·다양화·특성화 등을 적극 반영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정상화·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다양한 학습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새 대학입학제도에 부응하는 풍부한 전형 관련 자료가 제공되도록 함
- 중복 또는 부정확한 정보·자료의 기록은 폐지·개선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편의성·효율성 등이 제고되도록 함

훈령 제616호가 시행되면서 특수학교에서는 교육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 위해 자료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데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는 그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특수학교용 시스템이 없어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병설되어 있는 점과, 제7차 특수학교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으로 이원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반영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났다.

3.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 훈령 제676호 특수교육 관련 내용 분석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나 보존에 관한 규정들은

자주 변동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분명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부령으로 제정하였으며,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과 관리에 대한 규칙 및 지침의 적용 범위를 부령에서 명시(특수학교)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학생 정보 항목의 공유 범위와 보존기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이라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 부령 제867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학교중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된 훈령 제676호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 학교생활기록부가 하나의 학교 급별로 하나의 양식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I)과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생부 II)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도록 부령에서부터 명시하여 훈령에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제15조의 2(치료교육활동)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치료교육활동 내용은 다음 사항에 의거 기록한다.

- ① 치료교육활동은 장애아동의 결함을 보상하고 생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 ② 치료교육활동 영역은 장애 영역에 관계없이 개별학생의 필요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치료교육활동의 8개 영역 중 개별학생의 필요에 적용하는 교과목의 교육

24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3호)

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그 이수 내용은 1, 2학기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발달변화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④ 학년별 치료교육활동 영역은 개별학생이 8개 교과목 중 1개 교과목 이상 이수할 때에는 이수하는 과목별로 입력한다.

⑤ 특기사항은 치료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교육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입력한다.

훈령 제676호(교육인적자원부, 2005)는 특수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에 15조 2(치료교육활동)가 신설된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훈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이중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중요한 교육활동인 교과학습에 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기록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때, 특수학교에서 치료교육활동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 국가수준에서 편성된 교육과정이며 중요한 교육활동이기에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치료교육활동에 대한 양식이나 작성방법과 관련한 지침 없이 일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양식에 임의로 치료교육활동을 기재하였다. 그로 인해 학교에서 중요한 법적 문서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록이 체계적으로 작성·관리되기 보다는 시·도교육청이나 각 학교 마다의 기준으로 작성되어 특수학교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치료교육활동상황’의 신설로 인해 그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훈령 제676호 제15조의 2(치료교육활동)에 대한 규정이 치료교육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치료교육활동을 중요한 교과활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체계적으로 계획함과 함께 기록하여야 함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치료교육활동의 목적, 대상, 영역, 기재요령 등의 내용을 5개 하위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훈령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훈령 해설에는 치료교육활동의 서식까지 제공하고 있다.

*** 훈령 제676호 제15조의 2 해설**

- 제15조의 2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치료교육활동 내용은 다음 서식에 의거 기록한다.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임)

학년	치료교육활동영역	1학기	2학기	특기사항
1				
2				
3				

훈령의 해설에는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중고등학생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기재에 대한 방법 또한 명시하고 있어, 특수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교육행정시스템과 교무학사영역의 교무업무시스템으로 분리되면서 특수학교 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중학생은 일반학교와 같이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교과, 과목명을 입력하고, 성취도·석차·재적수를 입력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고, 고등학생은 교과·과목명·단위수를 입력하고, 원점수·평균·표준편차·석차등급을 입력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대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1학기, 2학기를 구분하여 교과목별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이것은 특수학교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더불어 하나의 학교영역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와 더불어 특수학교가 일반학교와는 달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이 병설되어 있는 점과 교육과정 역시 국민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으로 이원화 되어있으며, 치료교육과정이라는 특수학교만의 특징을 적용하기에는 기존의 일반학교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특수학교의 교무학사 운영에 부적합하여 특수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됨을 반영한 것이다.

4.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9호 특수교육 관련 내용 분석

훈령 제719호는 초·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과 대학입학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생 정보 항목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인권 침해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학교생활기록부I에서는 출력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II에서만 출력되는 것으로 하여, 학생 정보 항목의 공유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의 2(치료교육활동) 초·중·고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교육활동 내용은 다음 사항에 의거 기록한다. (이하 동일)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단,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포함하여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의 전산자료와 종이 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를 전산매체로 5년간 추가 보존한다.

훈령 제719호 제1조의 목적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적용하는....’으로 명시하고 있어 특수학교가 동등한 학교급으로 인정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제15조 2의 치료교육활동에 대한 부분도 훈령 제676호에서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훈령 제719호에서는 ‘초·중·고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일반 교육에서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이 훈령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18조(자료의 보존)이다. 훈령 제676호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로 분리하여 작성 및 관리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여러 가지 특기사항 및 세부사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에만 기록하여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만 보존하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폐기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교육과정을 적용 받는 특수학교의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과학습의 기록을 교과학습발달사항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형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에만 기재가 되고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는 기록되지 않아 졸업 후 5년 뒤에는 자료가 폐기되어 학생들의 교과학습발달상황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9호에서는 제18조 자료보존에서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포함하여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의 보존기간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의하여 준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교육청 자료관에서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관할 학교에서 생산된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이 각종 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기록물비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밝힌 것이다.

훈령 제719호는 특수학교의 교육활동의 기록과 관리에 대한 사항이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중요성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나이스 교무업무시스템에서도 일반학교의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8호 특수교육 관련 내용 분석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8호

제15조의 2(치료교육활동)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초·중·고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교육활동 내용은 다음 사항에 의거 기록한다. (이하 동일)

훈령 제158호에서 제15조의 2(치료교육활동)가 ‘초·중·고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교육활동 내용은 다음 사항에 의거 기록한다.’로 변경된 것은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바뀌면서 치료교육 대신에 치료지원으로 전환 되었고, 그에 따라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활동이 사라지고 특수교육대상자별로 치료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 교육과정을 적용받은 학생에게만 적용하도록 한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와 특수교육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

제15조 2 치료교육활동 삭제

훈령 제228호에서는 제15조의 2(치료교육활동)이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이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연차적 적용이 끝남에 따라 관련된 치료교육활동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훈령에서 치료교육활동이 삭제된 것은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항이 사라진 것이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록과 관리가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록이나 관리하는 것이 학교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11년 새로이 개발된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에서는 특수학교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로 개발·실행되었는데,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은 특수학교 개별화교육과정의 법제도적 검토 및 양식 표준화를 제공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전산처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영걸, 권기홍, 2012).

IV. 결론 및 제언

1.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관련 훈령의 변화와 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내용 요약 및 분석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은 훈령 제558호 1997년 12월 1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 1997)’을 시작으로 훈령 제282호 2013년 2월에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3)까지 총 18번의 변화과정을 거쳐 왔으며 이를 다시 전산처리 시스템을 기준으로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1기 전산처리 도입기는 훈령 제558호(교육부, 1997)에서부터 훈령 제671호(교육인적자원부, 2005)까지로 1997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개발 및 활용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 시도로 교사의 업무경감, 학교생활기록부 보관 및 활용의 전산화를 시작하는 시점과 함께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변화를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제2기 전산처리 발전기는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 2005)’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87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0)까지로 학교생활기록부

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부령 제867호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관리가 정착되면서 드러난 정보보호, 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이 ‘교무업무시스템’을 개발·활용하게 되었다.

셋째, 제3기 전산처리 정착기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205호(교육과학기술부, 2011)에서부터 현재까지로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된 시기로 교무업무와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학교회계까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변화하는 교육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가 정착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된 훈령에서 나타난 특수교육 관련 내용은 교육부 훈령 제587호(교육부, 1999),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교육인적자원부, 2001),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9호(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58호(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과학기술부 훈령228호(교육과학기술부, 2013)으로 총 6번이다.

훈령 제587호는 학생생활기록부 관련 훈령에서 처음으로 특수학교를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수학교 학업성적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이전까지 특수학교의 학업성적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속 시도교육청의 지침이나 학교자체의 규정으로 성적관리가 이루어졌던 점에서 볼 때 훈령에서의 명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는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및 NEIS 활용을 위해 새 훈령을 제정한 것이며, 교육과정 변화에 특수학교의 내용도 함께 포함된 것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록과 함께 제시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와 훈령 제676호는 특수교육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수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는 특수학교 교무업무시스템이 개발 및 활용되었으며,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제15조 2 치료교육활동’이 신설된 점은 특수학교가 일반학교와는 교육활동과 그 기록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점을 법적으로 명시한 중요한 내용이다.

훈령 제719호는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부 작성 및 관리를 훈령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특수학교가 완전한 하나의 학교급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한 자료 보존을 위해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학교생활기록부 I에 교과학습발달사항을 포함하여 준영구 보존 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28호에서 제15조 2 치료교육활동이 삭제된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으로 치료교육이 치료지원으로 바뀌게 됨과 그에 따른 교육과정 변화와 적용이 완료된 것이다.

2. 시스템 활용 관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관련 훈령의 특수교육 관련 내용 분석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는 1997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시작으로 전산처리 도입기(1기), 전산처리 발전기(2기), 전산처리 정착기(3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각 시기를 전산처리 시스템으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전산처리 시스템의 활용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특수교육 교육활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각 구분 시기에 따른 전산처리 시스템과 특수교육 교육활동의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전산처리 도입기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였다. 훈령 제587호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훈령으로는 처음으로 특수학교를 명시하여 전산처리해야 함을 밝히고 있으나, 당시의 시스템은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맞추어 개발된 것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병설된 것, 치료교육과정에 대한 기록 불가 및 국민공통교육 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의 이원화된 체계를 적용해야 하는 특수학교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어 실제 특수학교에서는 활용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이 주류로 인정받지 못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라는 큰 변화에서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사실상 아날로그 방식(수기 작성)을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후 훈령 제616호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특수학교의 내용이 함께 포함된 것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시됨으로써 일반학교 NEIS 시스템으로 특수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처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특수학교만의 시스템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산처리 발전기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처리하게 됨에 따라 드러난 정보보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령 제867호(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의 제정과 함께 이를 구현하는 ‘교무업무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새로이 만들어진 교무업무시스템은 특수학교용 시스템이 별도로 만들어져 특수학교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처리 및 관리가 법적이거나 시스템의 활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활용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특수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을 전산관리 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한 시스템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왔으나, 훈령을 토대로 특수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를 교무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처리 및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단지 법적근거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와 연동되는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전산처리 및 관리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전입·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일반학교 보다 복잡한 학교편제 및 교육

과정 구조를 지닌 특수학교가 이전의 수기 방식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훈령 제719호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한 자료 보존을 위해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학교생활기록부 I에 교과학습발달사항을 포함하여 준영구 보존하도록 명시한 것은 특수학교의 교육활동의 기록과 관리에 대한 사항이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중요성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나이스 교무업무시스템에서 다른 방식을 활용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전산처리 정착기는 차세대 나이스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활용한 시기인데, 훈령 제205호(교육과학기술부, 2011)에서부터 현재까지로 볼 수 있다.

차세대 나이스는 일반학교에서는 교육관련 여러 시스템의 통합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만 특수교육에서는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이 새로이 개발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차세대 나이스의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은 특수학교 개별화교육과정의 법제도적 검토 및 양식 표준화를 통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양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모순되는 것은 교육활동을 전산관리 하기 위해서는 훈령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어야 하나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시스템은 존재하고 활용하고 있으나, 작성방법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은 훈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상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관련 교육부 훈령 개정에 따른 특수교육 교육활동 작성 변화에 대한 논의 한 것을 바탕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활동을 기록하는데 있어 법적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체제로 개선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과 이를 구현 하는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훈령 제228호에서 제15조 2 ‘치료교육활동’이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적용이 완료됨에 따라 삭제되었으나, 특수교육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이나 특수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적으로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지 못해 관련된 내용의 작성에 있어 학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훈령을 통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활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NEIS)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훈령과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현장 연구를 함으로써 나이스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국립특수교육원 (1994). **한국 특수학교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서울: 문영사.
- 국립특수교육원 (2008). **특수학교 교유과정 전문가 과정**.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 교육부 (1997).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훈령 제 558호). 1997. 12. 1.
- 교육부 (1999).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훈령 제 587호). 1999. 5. 1.
- 교육부 (2000).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훈령 제 602호). 2000. 3. 17.
- 교육부 (2000).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훈령 제 607호). 2000. 8. 7.
- 교육인적자원부 (200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훈령 제616호). 2001. 3. 29.
- 교육인적자원부 (200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훈령 제21호). 2005. 2. 25.
- 교육인적자원부 (2005).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부령 제867호). 2005. 9. 25.
- 교육인적자원부 (200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676호). 2005. 9. 25.
- 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719호).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728호). 2007. 7. 27.
- 교육과학기술부 (200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61호). 2008. 7. 28.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141호). 2009. 9. 23.
- 교육과학기술부 (201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158호). 2010. 1. 22.
- 교육과학기술부 (201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187호). 2010. 7. 29.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205호). 2011. 3. 17.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239호). 2012. 3. 17.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257호). 2012. 6. 29.
- 교육과학기술부 (201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282호). 2013. 2. 15.
- 김원경, 한현민 (2007). 2007 특수교육법의 쟁점과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4), 95-140.
- 김원경 (2008). 한국 특수교육의 실천적 정체성 탐색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4), 43-57.
- 김영걸, 권기홍 (2012). 나이스(NEIS)를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4), 387-414.
- 이석진 (2005). 한국 특수교육정책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컨소시엄 삼성SDS (2005). **교무업무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워크숍(특수학교) 자료**.
- 컨소시엄 삼성SDS (2010). **차세대 나이스 구축을 위한 설계 워크숍(특수학교) 자료**.

Study for the changes of The school records
computerized processing and management
guideline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Kim, Young Gull

Daegu Cyber University

Kwon, Ki Hong

Daegu University

Yoon, jeong ha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search for directive relat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school records writing and management guidelines and the history and the meaning for special education.

It was reviewed for research the revised directive for school records writing and management guidelines From December 1997 to February 2013, a total of 18 times. And It was analyzed to focus at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contents.

In result to analysis that the directive for school records writing and management guidelines divided into The first stage computational beginning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s), the second computerized generator (Education Business Systems), the third computational fuser(New NEIS) as Computerized processing system.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Directive No. 676 – an explicit treatment education.

Directive No. 719–preserving data on the basic curriculum for students

For contents of therapeutic education has been deleted in directive No. 228 because of completion apply to the curriculum. However, the legal basis is required so you can record that the required educational activities for students who need special education at school records as NEIS IEP. And it

25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3호)

was required to improve the NEIS system for related work to handle.

Key Words : directive, school records, special education, Computerized processing system

논문 접수: 2013. 08. 05 심사 시작: 2013. 08. 09 게재 확정: 2013. 09. 23